

[별지 제7호] <개정 2016. 12. 6., 2024. 7. 1.>

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

문서번호

2024. 7. 29.

수 신 금융감독원장

참 조 (담당 부서장)

제 목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(또는 해임/사임) 내용을 보고합니다.

- 붙 임 : 1. 위험관리책임자 선임(또는 해임/사임) 내용 1부  
2.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 1부. 끝.

코람코자산운용 대표이사 박형석(인)



작성 자 : 김보람 과장

전화번호 : 02-2251-7300

(붙임 1)

위험관리책임자 선임(또는 해임/사임) 내용

1. 위험관리책임자 선임

성명 (한자)	직위	임원 여부	주민등록 번호 (앞의 6자리)	선임일	임기 (만료일)	업무 범위	겸직 직위 및 업무	주요 경력 <sup>1)</sup>	자격요건 확인결과
홍장혁 (洪章赫)	차장	N	850214	2024. 07.31	2년 (2026. 07.31)	내부통제 감사 리스크관리	준법감시 인, 위험관리 책임자	2011.02 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 학사  2011.11~2020.04 신한아이타스 컴플트레이딩부 (펀드컴플라이언스)  2020.04~2021.12 하이자산운용 컴플라이언스팀 (내부통제 및 감사업 무)  2021.12~2023.08 BNK자산운용 컴플라이언스팀 (내부통제)  2023~현재 코람코자산운용 컴 플라이언스팀	적합

주 1) 주요 경력란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학력 또는 기관에서  
의 근무경력과 최근 5년간의 근무경력을 연월 단위로 기재

## 2. 위험관리책임자 해임(사임)

성명 (한자)	주민등록번호 (앞의 6자리)	선임일	해(사)임일	해(사)임사유 <sup>1)</sup>	비고 <sup>2)</sup>
강현정 (姜顯貞)	760807	2023. 06.25.	2024. 07.31	일신상의 사유	-

주 1) 해(사)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이사회 결의서, 사직서 사본 등) 첨부

2) 향후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선임일정 및 절차 등

(붙임 2)

###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

성명 (한자)	홍장혁(洪章赫)	직위	차장
심사항목		심사결과	비고
1. 법 제28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,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 1)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)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		해당사항 없음	-
2.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*. 다만,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8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		해당사항 없음	-
3.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		해당사항 충족	-
<b>종합 의견</b> 위 사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하는 격요건 및 심사항목을 통해 심사한 결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충족 함			
2024년 7월 29일 코람코자산운용 위험관리책임자 홍장혁 (홍장혁 인) 코람코자산운용 대표이사 박형석 (인)			

\*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,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

#### 【첨부서류】

1. 이사회 결의서
2.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(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)
3.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그밖의 감독·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(감봉요구)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, 감독기관·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4. 법 제2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(경력증명서 등)
5.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금융법규상 위험관리책임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. 다만,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,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)
6.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